

마포보장구수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4-146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4. 11.
제출자: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장애인 보장구 수리, 세척·소독, 대여, 안전교육 등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설치된 마포보장구수리센터 위수탁 협약기간이 2025. 4. 30.자로 종료됨에 따라 보장구수리센터 위탁사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마포구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: 마포보장구수리센터 운영

나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

1) 추진근거

- 「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4조 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 (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)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(민간위탁 대상사무 등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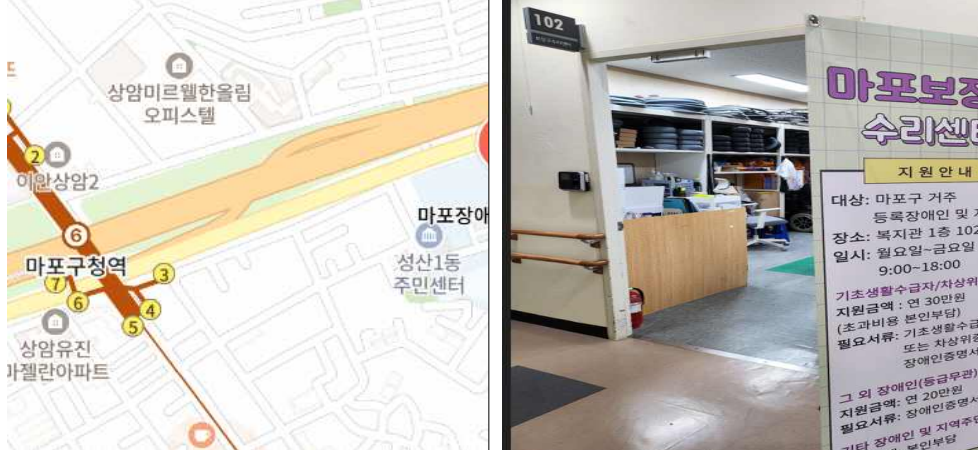
2) 필요성

-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위탁 운영체 선정으로 보장구 수리, 세척·소독을 통한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 및 수리비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

다. 위탁사무 내용 및 범위: 마포보장구수리센터 운영 및 사업 전반

- 1) 마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센터 운영 및 관리
- 2) 휠체어 등 수리 사업
- 3) 휠체어 등 대여 사업
- 4) 휠체어 등 세척·소독 사업
- 5) 휠체어 등 상담 사업
- 6) 휠체어 등 홍보 사업 등

라. 위탁시설 개요

구 분	내 용
소재지	마포구 성산로4길 35,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1층
규모	전용면적 42㎡
위치도	
비 고	<p>※ 現 마포보장구수리센터 위탁개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위탁기간: 2023. 5. 1. ~ 2025. 4. 30.(최초위탁일 2019. 2. 1.) - 운영기관: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- 인 력: 수리기사 2명

마. 민간위탁기간: 3년(2025. 5. 1. ~ 2028. 4. 30.)

바. 수탁자 선정방식: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에 의거 선정(재계약)

사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(2024. 10.기준)

1) 소요예산: 151,500천원(시비: 16,000천원, 구비: 135,500천원)

(단위 : 천원)

예산과목		2024년 예산액	산출내역		비고
목	세목				
계					
민간 이전	민간위탁금	151,500 시 16,000 구 135,500	1)인건비 79,000 1)운영비 4,140 1)사업비 68,360 시 16,000 구 52,360		구비 92% 시비 8%

아.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

- 1)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은 센터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, 비영리단체 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할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지정 또는 위탁할 수 있음
- 2) 마포보장구수리센터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센터 운영으로 장애인복지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음

자.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

- 1)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준수하여 민간위탁 진행
- 2) 2024년 마포보장구수리센터 성과평가 결과: 75.5점(재계약 가능)
- 3) 추진일정(안)
 - 마포보장구수리센터 재계약 계획 수립: '25. 1월
 - 민간위탁 운영신청서 접수: '25. 2월
 -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(선정): '25. 3월
 - 위탁 운영 개시: '25. 5월

3. 참고사항: 관련 법령

○ 「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보조기기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촉진, 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 대한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에게 적합한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○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」

제3조(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)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휠체어 등을 수리할 수 있는 수리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센터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, 비영리단체 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관할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지정 또는 위탁할 수 있다.

○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 등)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제5조(의회 동의 및 보고)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(이하 “구의회”라 한다)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을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<개정 2021.5.6.>